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포상 추진계획

2025. 5.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I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착한 기부자와 모금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다양한 기부 사례 공유를 통해 기부활성화 등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제고

* (포상근거) 기부금품법 제3조의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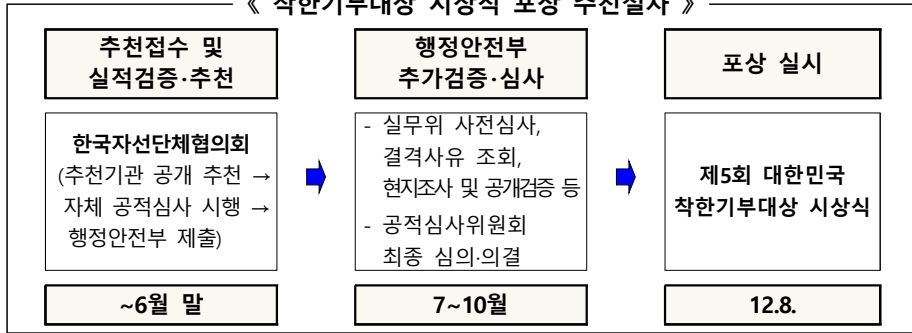
- (포상대상)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기업·단체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비영리 모금단체
- (포상규모) 총 19점(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13)
※ '25년 장관표창 13점^{확정}, 대표·국표 최종규모는 9월 이후 확정 예정(상훈과 규모협의)
- (후보심사) 공적심사실무위원회 사전심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적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적심사실무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실시
 - 현장전문가, 기부단체, 담당공무원 등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 자원봉사대상 공적심사와 함께 추진
- (추진절차) 후보자 추천(~6월말) → 공적심사(7월~10월) →포상(12.8.)

II 추천절차 및 기준

1 추천절차

-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분야별(개인·기업·단체/모금단체) 후보자를 추천기관*을 통해 공개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외부위원 참여) 결과에 따라 1.5배수, 훈격 구분없이 가나다순으로 제출
 - * (추천 자격) 후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자선단체, 비영리 단체의 장 및 기타 사회공헌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수상여부와 훈격은 행정안전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추천기관의 후보자 모두가 수상하는 것은 아님

《 착한기부대상 시상식 포상 추진절차 》



2 추천기준

- 나눔과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과 온기나눔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 다양한 직종·분야별 개인·기업 기부자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예술·스포츠인 등의 기부자 및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비영리 모금단체 적극 발굴
-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공적기준일 : '25.10.1. / 개인, 기업, 단체 및 모금단체로 구분하여 심사 및 추천

III 공적확인 및 심사

1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심사위원의 6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회원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 추천기관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

- 자체 심사기준 : 정량지표 20점, 정성지표 80점

※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심사지표(안) >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비고
정량지표 (20)	공적기간	- 기부·나눔을 수행한 공적기간(개인·기업·단체)	
		-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속성(모금단체)	
정성지표 (80)	사회적 홍보효과 (확산성)	-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어 기부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킨 정도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파급효과	- 기부·나눔활동의 파급효과 및 현장변화의 정도 (국가적 수준, 분야별 수준, 지역적 수준)	
	주도적·협력적 참여노력	- 기부·나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 - 활동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형성한 정도 (높은 수준, 중간수준, 낮은 수준)	
	지역사회 기여도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합 계			

※ 지표구분 : 정량·정성지표로 구분

▶ 정량지표 : 기부활동 공적기간을 계량적으로 심사하는 지표(20%)

- 10년 기준 만점, 1년 단위 2점

▶ 정성지표 : 기부·나눔분야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80%)

※ 심사지표(안)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2 수공기간 ※ 기준일 : '25.10.1.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민간인의 경우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축 가능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3 재포상 금지기간 ※ 기준일 : '25.10.1.

《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개인)**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4 추천 제한

《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군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